

해양환경행정상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체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안기수* · 박성욱***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Waste in Marine Environment Administration

Kisoo AHN* · Seongwook PARK***

*, ** Marine Policy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Ansan, 15627, Republic of Korea

핵심용어 : 폐기물, 해양쓰레기, 해양환경

Key Words : Waste, Marine debris(litter), Marine environment

1. 개요

현재 우리나라 해양환경행정상 폐기물은 해양폐기물, 해양쓰레기, 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행정의 독자성 확보를 전제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 등 해양에서 실효적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위한 분류 체계의 수립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는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행정과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행정 간의 법체계 및 행정조직 구성의 미흡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양환경 행정상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공법과 사법의 중첩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법 체계에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행정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류사회의 진보에 따른 여러 차례의 기술 혁신과 산업 혁명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산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대량 생산은 곧 대량 폐기를 필연적으로 낳게 되며, 생활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및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되는 이원적 코드로 구성된 법체계에서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의 구분 필요성은 결국 환경법 체계에서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 및 분류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더욱이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행정은 육상에 비하여 기능적 및 공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중략)

특정 물질을 생활공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처리 및 관

리하고자 창설된 ‘폐기물’ 개념은 개별 주체의 필요성에 따른 주관적 구분 혹은 공동체의 판단을 전제로 위험성 여부에 따른 객관적 구분으로 설정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육상과 해양이라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해양폐기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질이 ① 해양에 존재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 해양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하는 것인지 법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07월 18일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본 제정안은 “해양폐기물”이란 용어를 창설하면서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중 해양 또는 해안가에 유입·투기·방치되어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폐기물” 개념은 기존 개별 인간 혹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주관적·객관적으로 폐기물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에 더하여 해양환경의 관점(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을 추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략)

3. 정리

어떠한 물질의 생산, 이용, 폐기 및 처분 등의 자연적 순환을 담당하는 행정에서 기준과 경계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일은 법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해양공간에서의 특정 폐기물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marine debris’ 또는 일본의 경우처럼 ‘海岸漂着物’ 등 기존 폐기물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어(예: 해양쓰레기 등)를 창설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국가 전체의 환경법 체계에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행정은 육상과 해양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일관된 환경행정의 대상으로 포섭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이 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 중인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선진화 전략」 과제의 연구지원으로 작성됨(PE99436)

* First Author : kisoo.ahn@gmail.com, 031-400-6582

† Corresponding Author : swpark@kiost.ac.kr, 031-400-6504